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99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3월 29일
- 다. 회부일 : 2019년 4월 3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백호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2006년 7월부터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년 6월 30일자로 5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금년 1월 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6년~2018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여,
-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동쉼터 운영 등 청소년운영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의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책 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청소년 지역사회 성장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기관과의 업무협약(초·중·고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을 통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거점 시설로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보라매청소년 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추진실적

- 이용인원 ※ '17년부터 '22년 까지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수련관 이용자 감소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7월~	554,263명	477,171명	86%
2017년	799,594명	698,054명	87%
2018년	421,721명	372,573명	88%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365	694
	2017	168	507
	2018	140	487
지역사회연계	2016	106	139
	2017	68	179
	2018	99	437

- 주요 우수사항

- ▶ 2016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 ▶ 2017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18년 서울시 위탁종합성과평가 1위 선정
- ▶ 2018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3)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지상 2층 2동, 부속동 공연장)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탁구장, 청소년전용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6)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요예산 : 3,034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90백만원, 물건비 215백만원, 경상이전 201백만원, 자본지출 296백만원, 사업비 1,152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380백만원

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총괄 내역

-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¹⁾ 4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²⁾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민간위탁 조례」는 미동의 민간위탁에 대해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금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제출되었음.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의 개요 >

의안번호	시설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597	시립 동대문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2,939	- 현 위탁기관 : (사)한국청소년연맹 - 소재지 :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 - 개관일자 : 2003.05.01 - 시설규모 : 부지 2,899㎡, 연면적 4,888㎡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소극장,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8	시립 강북	재계약	5,479	- 현 위탁기관 : (학)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소재지 : 강북구 4.19로 74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위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위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2019년예산 (백만원)	위탁시설 개요
	청소년 수련관			- 개관일자 : 2001.03.10. - 시설규모 : 부지 6,801㎡, 연면적 6,409㎡ - 지원시설 : 수영장, 체육관, 음악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599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재계약	3,034	- 현 수탁기관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600	시립 보라매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센터	재계약	611	- 현 수탁기관 :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 - 소 재 지 :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203㎡ - 지원시설 : 개인·집단 상담실, 교육실 등 - 위탁기간 : 2년 (2019.7.1~2021.6.30.)

○ 현재까지 평생교육국의 12개의 위탁시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9년 6개소, 2020년 6개소가 계약만료될 예정에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최초위탁일	시작일	종료일
1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06-4-17	2016-7-1	2019-6-30
2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6-7-1	2016-7-1	2019-6-30
3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2009-2-12	2016-7-1	2019-6-30
4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00-11-1	2016-7-1	2019-6-30
5	이동쉼터(서북)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6	이동쉼터(서남)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2004-4-12	2018-1-1	2019-12-31
7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재)대산문화재단	2000-5-1	2017-4-1	2020-3-31
8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2012-3-28	2017-4-1	2020-3-31
9	서울시 청소년 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10	시립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2-7-1	2017-7-1	2020-6-30
11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사)한국청소년연맹	2012-7-1	2015-7-1	2020-6-30
12	드림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1-12-2	2017-7-1	2020-6-30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³⁾에 따라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민간위탁’과 유사한 용어의 비교

- 위 임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 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대 행 :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면서 그 업무의 수행만을 맡기는 것

〈 위임·위탁·민간위탁·대행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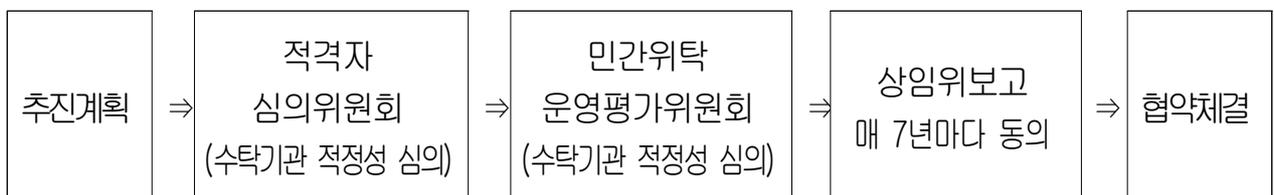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권한 이양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임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임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임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과 권한을 이전 -수탁기관 명의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 -위탁기관 권한상실 -행정쟁송 시 피고는 수탁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이전 없음 -대행기관은 위임 기관의 명의로 업무처리만을 대행 - 권한과 책임이 행정 기관에 있음
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감독을 받는 하부기관(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상하관계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장→보조 기관,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행정기관의 장 ※ 동급의 행정기관, 지휘·감독 받지 않는 하부기관 · 광역자치단체장→다른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다른 기초 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개인 ※ 계측·검측·검사 등 행정 조사 관련 분야에서 널리 사용, 사용료·요금 등의 부과·징수에서 활용

3)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분	위임	위탁	민간위탁	대행
지휘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권을 행사
사전 승인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임사무처리에 대해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기관에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 요구 금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임규정 • 사무위임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개별 조례 위탁규정 • 사무위탁 조례 • 사무위임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규정

- 본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를 재계약을 위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각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 민간위탁은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에 한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들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청소년들에게 활동거리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조례」⁴⁾에 부합한다고 보여짐.

※ 학교장 권한의 휴무확대 및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문화·교류·체험 등의 활동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훈련된 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기관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위탁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성, 능률성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특수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으로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바,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① 동일 수탁법인의 동일 사항 반복 지적, ② 전문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③ 인력운영 합리성, ④ 동일 수탁 법인의 장기 수탁의 적정성, ⑥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의 타당성, ⑦ 성과평가 항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세부 내용 검토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이하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청소년에게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와 2년간(2019.7.1.~2021.6.30.)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의 개요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지상 2층 2동, 부속동 공연장)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탁구장, 청소년전용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요예산 : 3,034백만원(2019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평생교육국은 보라매수련관이 대외적 활동(2016~2018년 여성가족부, 서울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를 고려하여 2년간의 재계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보라매 수련관은 종합성과평가(2019년)에서 인사(징계)관련 규정 미준수, 인력운영 관리(복무) 규정 미준수, 회계처리(카드사용, 1계좌 4개 카드발급) 규정 미준수, 재물조사(작업일자 오기, 물품관리포 부착지연) 관련 사항이 지적되어, '회계관리' 및 '사업예산 집행 효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바 있음.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종합성과평가 총괄표 〉

구분	대영역	중영역	평가지표	배점	지표유형	점수			
공 통	사업인프라 (25)	1 조직 및 인력운영	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10.0	5.0	정량	5.0		
			1.2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5.0	정량	3.0		
		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2.1 회계관리 적정성		7.0	5.0	정량	3.0	
			2.2 사업예산 집행 효율			2.0	정량	1.6	
		3 자원운영 및 사회적 가치 기여	3.1 재산 및 물품관리		8.0	3.0	정량	2.4	
			3.2 시설 및 기자재 활용			2.5	정량	2.5	
			3.3 사회적기여 등 위탁사무가치제고			2.5	정성	2.5	
		사업활동 (10)	1 사업계획 및 사업관리	1.1 중장기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적정성		4.5	2.5	정성	2.0
				1.2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2.0	정성	2.0
	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2.1 사업 활성화 개선 노력도		5.5	2.5	정성	2.5	
			2.2 이해 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1.5	정성	1.5	
			2.3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1.5	정성	1.5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노력 (15)	1 프로그램 질적수준 제고	1.1 성과목표의 적절성		10.0	5.0	정성	5.0	
			1.2 대외적 우수사례 성과창출 수준			5.0	정성	5.0	
		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2.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	5.0	정량	5.0	
	사용자 만족도 (20)	1 만족도 조사	1.1 만족도 조사		20.0	15.0	정성	14.5	
		2 만족도 제고 노력	2.1 만족도 제고 노력			5.0	정성/정량	5.0	
	특 화	사업성과 (30)	1 프로그램 개발	1.1 프로그램 개발 적정성	10.0	10.0	정성	10.0	
				1.2 프로그램 집행률	5.0	5.0	정량	5.0	
			2 프로그램 운영	2.1 청소년 이용률		15.0	10.0	정량	6.0
2.2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5.0	정성		4.0		
합계				100	100	-	89.0		

○ 보라매수련관은 지원형 시설로 타 청소년수련관과는 다르게 수영장 이외의 수익사업인 교육·문화사업(댄스, 요가, 에어로빅, 명상, 필라테스, 발레, 미술, 악기, 음악, 수학, 영어 등)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관련 공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관의 지원형·자립형 시설 구분 기준 : 수익사업 시설(수영장)의 유무

- 자립형 청소년수련관(14개소) : 문래, 목동, 수서, 노원, 강북, 구로, 성북, 마포, 은평, 성동, 금천, 망우, 동대문, 서대문
- 지원형 청소년수련관 (7개소) : 서울, 강동, 중랑, 창동, 광진, 화곡, 보라매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공모사업

- 보라매수련관의 수입은 2017년(33억5천3백만원) 대비 2018년 수입이 5.4%(35억3천2백원, 1억7천9백만원 증액) 증가했으며, 이는 공모사업의 추진이 주 원인으로 보여짐.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수입증감 현황 〉

(단위:천원)

	2017	2018	증감	
			금액	비율
수입	3,353,096	3,532,745	179,649	5.4%
사업수입	1,299,742	1,185,348	△114,394	△8.8%
사업외수입(법인전입금, 예수금 등)	418,768	535,757	116,989	27.9%
보조금(사비, 민간대행, 특별사업비 등)	1,634,586	1,811,640	177,054	10.8%

○ 보라매수련관의 부족한 시설운영비를 위한 다수의 공모사업이 청소년활동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인원(33명)의 과도한 공모사업 수행이 서울시의 위탁사업 추진을 소홀히 할 여지는 없는지 등 다수의 공모사업을 통한 수입 증진사업 병행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보라매수련관의 민간위탁 사업 수행 직원 : 총 33명(정규직 23명, 비정규직 10명)

〈 최근 3년간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의 공모사업 현황 〉

	2016	2017	2018
소계	24개	19개	25개
1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사업(chicks crew)
2	우리 동네 이동과학관	동작구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사업	놀토체험버스
3	서울시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우리 동네 이동과학관	서울시 동아리지원사업
4	놀토체험버스	동작구청소년참여위원회	동작구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5	대학생 도시재생 홍보대사	K2와 함께하는 스쿨핑운영	1.3세대 통합활동(어울림프로젝트)
6	다시수련관을디자인하다	사랑의교실(서울지방경찰청)	대학생도시재생 서포터즈
7	서울시-베이징시 청소년 문화사절단 교류 프로젝트	도시재생 대학생 서포터즈	에코유스

8	동작구청소년참여위원회	들리니? 숲소리, 보이니? 숲속 풍경!	K2스쿨핑
9	K2와 함께하는 스쿨핑운영	진로동아리 활동지원(도화지)	보라매숲속놀이터
10	사랑의교실(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대학생 건축홍보 서포터즈	우리가그린동네
11	창업의 과정을 통한 진로역량개발	서울시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With You
12	꿈꾸는 초록씨	청소년 특별교육	방학프로그램지원사업(희망드림)
13	청소년 문화공연 활성화사업	칙칙폭폭! 독서기차	3D TOYS특공대작전
14	Green up! park	서울-방콕 청소년 문화교류	청소년선거권 DO VOTE
15	우리동네 독립기념관	동작관악학생참여위원회 리더십 캠프	청소년박람회
16	방콕문화교류대장정	강원도평창드림프로그램	사랑의교실
17	서울진로직업박람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서울진로직업박람회
18	강원도평창드림 프로그램	진로동아리 활동지원(kestrel)	서울시 청소년어울림마당
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우리가만드는 우리동네역사도서관	너와나의환경
20	동작구와 함께하는 도심 숲 이야기		청소년 특별교육
21	창의쑥쑥! 진로북아트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연구사업
22	생명사랑비가 내려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연수
23	동작구 동아리활동지원사업(보라매)		방콕 문화교류
24	서울문화교류탐방		청소년 코디네이터
25			우리동네 이동과학관

- 다만, 서울시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율은 18.8% 수준으로, 각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의 지원금 외에 수련관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수영, 교육문화사업 또는 공모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한 단체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지원현황(2016~2019) 〉

(단위: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예산액	75,143	76,478	78,898	80,515
위탁운영비	11,640	12,355	14,005	13,409
운영평가	-	-	-	1,721
비율	15.5%	16.2%	17.8%	18.8%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⁵⁾는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소관 사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민간위탁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최종 운영평가위원회 결과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출처 : 의안번호 597, 598, 599, 600의 제안이유 발췌

- 또한, 민간위탁 평가에서 재무, 인사, 회계에 지적사항이 집중되어 있고, 각 시설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어, 청소년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에 앞서 행정, 재정, 회계 등의 철저한 규정준수가 평생교육국과 수탁법인에 강력히 요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을 수탁한 단체는 대규모 단체들로 기본적인 행정처리 능력 및 위탁업무 수행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나,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사항이 집중적·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이 원인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이러한 거대 청소년단체들은 지난 20여 년간 변하지 않는 서울시의 수탁기관 선발요건에 최적화되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수탁여부를 판가름하는 단체의 경력, 재무, 조직, 자격요건 등을 중요시 여기는바,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다양화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정단체의 장기수탁을 방지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평생교육국은 관리상, 행정상 업무를 축소할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에 있는바, 행정 편의를 위하여 거대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독점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99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2006.7월부터 재단법인 서울가톨릭 청소년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19.06.30.자로 5번째 3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나. 금년 1.22.일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6년~'18년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점을 고려하여,
- 다. 2년간 운영기간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2021.06.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재계약 사유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 시설로,
- 지난 3년간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법인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사업과 대안학교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이동쉼터 운영 등 청소년운영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임
-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의 영역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정책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시설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 청소년 지역사회 성장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역기관과의 업무협약 (초·중·고 학교,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을 통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서의 지역네트워크의 중심에서 거점 시설로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동 법인에게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을 2년간 재계약 운영토록 하고자 함

○ 3년간 주요 추진실적

- 이용인원 ※ '17년부터 '22년 까지 경전철 공사로 인하여 수련관 이용자 감소

사업구분	이용 인원	청소년 이용인원	청소년 이용률
2016년 7월~	554,263명	477,171명	86%
2017년	799,594명	698,054명	87%
2018년	421,721명	372,573명	88%

- 지역·학교연계 실적

구분	연도	기관	프로그램
학교연계	2016	365	694
	2017	168	507
	2018	140	487
지역사회연계	2016	106	139
	2017	68	179
	2018	99	437

- 주요 우수사항

- ▶ 2016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선정
- ▶ 2017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 2018년 서울시 위탁종합성과평가 1위 선정
- ▶ 2018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다. 위탁 사무의 범위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개관일자 : 1986.12.09
- 시설규모 : 부지 5,100㎡, 총면적 5,260㎡ (지상 2층 2동, 부속동 공연장)
- 지원시설 : 공연장, 강의실, 청소년카페, 탁구장, 청소년전용공간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 2년 (2019.07.1 ~ 2021.0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소요예산 : 3,034백만원('19년)
- 산출근거
 - 인건비 790백만원, 물건비 215백만원, 경상이전 201백만원, 자본지출 296백만원, 사업비 1,152백만원, 사업외 지출 등 기타 380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은진 (☎2133-4122)